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우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424

발의연월일: 2023. 1. 11.

발 의 자:정우택·황보승희·박정하

박성민 • 하영제 • 김학용

양정숙 · 정운천 · 김용판

金炳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%p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. 대출금리가 8%대의 고공행진 중인데 반 면, 지난해 말 연 5%대였던 시중 은행들의 예금금리는 한 달 만에 3%대로 급락하였음.

가계 빚이 1870조 원을 넘긴 가운데,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연 소득의 60%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쓰는 실정임. 특히 저성장 경제위기 및 경제 고통지수 장기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에 대출을 이용한 사람들은 부동산값 급락과 고금리 이중고에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있음. 그럼에도 지난해 8개 은행 이자이익만 53조 원, 직원들에 거액의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,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

하여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·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).
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의3의 제목 "(경영공시)"를 "(경영공시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은행은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율과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율 및 그 차이(이하 이 조에서 "예대금리차"라 한다)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
- ③ 은행은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9조제1항제7호의4 중 "제43조의3"을 "제43조의3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
- 2. 제4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

3. 제4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은행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의3 <u>(경영공시)</u> (생 략)	제43조의3 <u>(경영공시 등)</u> <u>①</u> (현행
	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은행은 각종 예금에 대한
	이자율과 각종 대출 등 여신업
	무에 대한 이자율 및 그 차이
	(이하 이 조에서 "예대금리차"
	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
	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③ 은행은 예대금리차와 그에
	따른 수익을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
	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6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69조(과태료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
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	
과한다.	
1. ~ 7의3. (생 략)	1. ~ 7의3. (현행과 같음)
7의4. <u>제43조의3</u> 을 위반하여 공	7의4. <u>제43조의3제1항</u>
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	
용을 공시한 은행	
7의5. ~ 11. (생 략)	7의5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	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 해당하는 은행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<u>태료를 부과한다.</u>

- 1.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 니한 은행
- 2. 제4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 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 행
- 3. 제4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은행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⑤ · ⑥ (생 략)